



생명보험의 이해 8: 실제 생명보험상품의 예

오병국 연구원

-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는 연금보험, 교육보험, 어린이보험, 종신보험, CI보험, 통합보험, 변액보험, 유니버설보험, 장애인보험 등이 있음.

- 연금보험은 사람이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경우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임.
 - 연금보험은 자신이 가진 경제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근로기간부터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경제활동이 중단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임.
 -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전의 위험보장기간(제1보험기간)과 연금수령기간(제2보험기간)으로 구분되며, 위험보장기간에 사망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됨.
 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 개인연금저축제도를 1994년에 도입하여 2000년까지 판매하였으며, 2001년부터는 보험료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, 연금세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저축상품이 판매되고 있음.

- 교육보험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임.
 - 부모의 생존 시에는 각종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 지급되며,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되고,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임.

-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임.
 - 아동기 안전사고,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, 골절, 화상 등 가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.

-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 없으며,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됨.
- **종신보험**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사망보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.
 - 보통 보장성보험이 특정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상품임.
 - 또한, 다양한 특약을 첨가하여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설계가 가능함.
- **CI보험**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며, 인구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2년에 처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.
 - CI보험은 암·심근경색·뇌졸중·말기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충분한 치료를 위해 보험금의 50% 혹은 80%를 선지급 받을 수 있고,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음.
 - 생존 시 고액의 치료비, 신체장애에 따른 간병비·요양비 등 환자 본인과 가족의 필요한 생활치료 자금을 보장해 주고 사망 시에는 잔여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.
- **통합보험**은 사망과 각종특약, 보장내용에 따른 피보험자의 구성 및 피보험자의 변경 등 가족과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보장뿐만 아니라 보장대상까지 변경이 가능한 신개념 상품임.
- **변액보험**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구성한 후 주식,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즉,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임.
 -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음.
 - 변액보험은 2001년 7월 최초로 도입되었으며, 현재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설, 변액종신, 변액CI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.
- **유니버설보험**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 변화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, 보험금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상품임.

- 유니버셜보험은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로 부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.
 - 유니버셜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운용되고, 운용리스크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함.
- 장애인보험은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,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의 최소생계유지,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개발된 상품임.
-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장애인전용보험과 5인 이상의 장애인전용보험가입대상자(단체)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이 판매되고 있음.
 - 장애인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며,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함.
 - 장애인전용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.